

[별지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점검표

평가기관 :

☐ 보유현황

○ 시설보유 현황

평가요소	적정여부
총 바닥면적이 120 제곱미터 이상인가?	
항온·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이 40제곱미터 이상인가?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이 40제곱미터 이상인가?	
기기실	
사무실	
기 타	

○ 장비보유 현황

구분	장비명	보유 기준	보유 수량	적정 여부
1) 폐기물의 유해특성 관련 장비				
폭발성	시간·압력 시험장비 또는 열·충격·마찰 등의 민감도 시험장비	1식 이상		
인화성(액상)	태그 밀폐식 시험장비, 펜스키마텐스 시험장비 또는 클리브랜드 인화점 측정장비	1식 이상		
인화성(고상)	작은불꽃착화 시험장치, 연소속도 시험장비 또는 인화점 측정장비	1식 이상		
자연발화성	공기접촉에 의한 자연발화여부 관찰 시험장비 등의 자연발화성 시험장치	1식 이상		
금수성	물과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가스포집 시험장비 등의 금수성 시험장치	1식 이상		
산화성(액상)	시간·압력 시험장비	1식 이상		
산화성(고상)	연소시험장비	1식 이상		
유출 독성	무기 물질류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1대 이상	
	유기 물질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1대 이상	
부식성	강판부식성 시험장비	1식 이상		
생태독성	물벼룩을 이용하는 생태독성 시험장비	1식 이상		
2) 환경영향 예측 관련 장비				
유리재질의 컬럼, 액체정량펌프, 시료충진도구 등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세트		1식 이상		
오염물질 등의 이동·흡착·확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		1식 이상		

(뒷 면)

○ 기술인력 보유 현황

구분	성명	직급	최종학교	경력	자격증	적정 여부
가. 박사, 기술사 1명 이상						☐ 적정 / ☐ 부적정
						☐ 적정 / ☐ 부적정
						☐ 적정 / ☐ 부적정
나. 기사 1명 이상						☐ 적정 / ☐ 부적정
						☐ 적정 / ☐ 부적정
						☐ 적정 / ☐ 부적정
다. 산업기사 1명 이상						☐ 적정 / ☐ 부적정
						☐ 적정 / ☐ 부적정
						☐ 적정 / ☐ 부적정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 적정 / ☐ 부적정
						☐ 적정 / ☐ 부적정
						☐ 적정 / ☐ 부적정
마. 비고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대한 적정 여부	☐ 적정 / ☐ 부적정					

비고

- 기술인력은 해당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외의 업체 등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 기술사는 해당 자격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로 해야 한다.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3명 이상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뒷 면)

○ 운영관리평가표

지침	연번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적정	부적정
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사항				

지침	연번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적정	부적정
	1.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요건 충족 여부		
	1.2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		
	1.3	기술인력의 자격증 보유 여부		
	1.4	평가업무가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조직의 명확한 구분 여부 (업무분장표 등)		
2.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시험·분석	2.1	시험·분석결과 산출근거의 적정 이행여부 (자료정리, 실험일지 등)		
	2.2	표준물질 및 시약 보유 여부		
	2.3	표준물질 및 시약 보관방법의 적정 이행여부		
실험일지	2.4	실험일지 작성의 적정 이행여부 (담당자·책임자 서명, 주요사항 확인)		
정도관리 및 교정	2.5	검출한계, 정확도 등 정도관리의 적정 이행여부 (회수율, 표준물질, cross check 등)		
	2.6	장비 교정 및 관리 기록의 적정 이행여부 (검량선 작성, 농도범위 등)		
	2.7	장비 및 계측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정도관리 여부 (검교정, 서류, 실적 확인)		
3.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3.1	현장조사표 작성 여부 (서류, 양식 등)		
	3.2	시료의 식별번호 표시 여부		
	3.3	시료채취도구 (용기, 체 등) 및 보관 장소 (온도, 오염도 등) 등 관리의 적정 이행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절차 및 평가서 등에 관한 사항				
	4.1	폐기물의 유형(일반,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유해특성(산화성, 폭발성, 인화성 등)에 관한 정보 이해 여부 (이해도 확인, 상담표 등)		
	4.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제품의 용도를 고려한 환경성평가 기준(안) 작성 능력 보유 여부		
	4.3	매체접촉형폐기물의 환경성평가를 위한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평가, 모델링 및 현장 적용성시험과 관련된 시험 이력 보유 유무 및 관련 결과물 보유 여부		
	4.4	매체접촉형폐기물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계획 능력 보유 여부 (계획서 등)		
	4.5	재활용환경성평가와 관련된 수행 실적 보유 여부		
	4.6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적정 이행여부 (평가항목, 절차) ※ 지정 후 평가		
	4.7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의 적정 이행여부 ※ 지정 후 평가		
	4.8	재활용환경성평가와 관련한 규정 및 고시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지정 후 평가		
5. 서류비치에 관한 사항				
	5.1	실험일지 비치 여부		
	5.2	재활용환경성평가 접수대장 비치 여부		
	5.3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실적대장 비치 여부		
	5.4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시험방법 비치 여부		
	5.5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규정집 비치 여부		

지침	연번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적정	부적정
6. 기타 사항				
	6.1	평가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6.2	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매뉴얼, 지침 등의 마련 여부		
	6.3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		
	6.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수수료 관련 준수사항 적정 이행여부		
	6.5	행정처분, 기타 행정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6.6	보완사항 조치 여부		